

## 감리지적사례 FSS/2008-22 : 골프회원권 손상차손 미인식

- **쟁점 분야:** 골프회원권 손상
- **관련 기준:**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
- **결정일:** 2015년
- **회계결산일:** '12.7.1.~'13.6.30.

### 1. 회사의 회계처리

A사(이하 ‘회사’)는 ‘08년부터 ’08년까지 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다. 회사는 동 회원권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어야 함에도, 거래시세가 하락하는 등 손상징후가 발생한 상황에서 회원권에 대해 손상평가를 수행한 적이 없다.

### 2.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

회사는 ‘13년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함에 있어, 회사가 보유한 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의 공정가치가 장부가치보다 현저히 하락하여 손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회원권을 과대 계상하였다.

### 3.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

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(자산손상) 문단 4 및 문단 8에 따르면 모든 자산은 매보고기간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,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한다.

회원권의 손상평가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문단 4 및 문단 8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에도, 회사 실무담당자들은 회원권에 대한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.

### 4. 감사절차 미흡사항

감사기준서 200(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) 문단 15, 감사기준서 500(감사증거) 문단 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,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,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.

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회원권의 거래시세 및 폐업여부 등을 확인하여 회사의 회원권 평가 금액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.

### 5. 시사점

회원권은 매 보고기간마다 취득원가와 회수가능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해야 하므로, 회원권의 시세정보 및 폐업여부 등을 보고기간마다 점검해야 한다.

감사인도 회원권의 손상평가시 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단순 확인하는데 그치지 말고 실제 회수가능액을 판단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.